

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

-미얀마연방정부 보건부(<https://www.mohs.gov.mm/>) 공문

-Ministry of Health, Myanmar 2022년 10월 7일 발행

1. 여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(a) 미얀마 입국 최소 14일 전 접종 완료한(Fully Vaccinated), COVID-19 백신 접종 증명서.

백신은 보건부에서 승인한 하기 명시 백신만 인정.

- CoronaVac (Sinovac Biotech Ltd.);

- AstraZeneca or Covishield (AstraZeneca & University of Oxford/SK Bioscience (Korea)/Siam BioScience/ Serum Institute of India (SII));

- Pfizer- BioNTech COVID-19 Vaccine or Comirnaty (Pfizer Inc., & BioNTech);

- Janssen or Johnson & Johnson (Janssen Pharmaceuticals Companies of Johnson & Johnson);

- Moderna (ModernaTX, Inc.);

- Sinopharm or COVILCO or BIBP-CorV (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., Ltd);

- Sputnik V (Gam-COVID-Vac) (Gamaleya National Research Centre of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);

- Sputnik Light (Gamaleya National Research Centre of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)

- Covaxin by Bharat Biotech; and

- Myancopharm by Ministry of Industry, Myanmar.

- Nuvaxovid (NVX-CoV2373) vaccine, Novavax Co.Ltd

- Covovax, Serum Institute of India fut Ltd

- CorBEvax™, Biological E Limited

12세 미만 유아들은 동행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위 요구조건에서 면제됩니다. 또한 여권과 함께 백신 접종 국가, 이름, 날짜는 **미얀마어 그리고(또는) 영어로 명시**되어야 합니다.

(b) **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승객은 반드시 미얀마 도착 시간 기준 최대 48시간 이내, 영문으로 발급된 COVID-19 RT-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**

12세 미만 유아는 제외됩니다. **COVID-19 RT-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결과와 검사 일시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미 확인 이력이 있으신 분은 영문으로 완치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류(격리해제서 불가)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** 여권과 함께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(c) (외국인 여행자의 경우) 미얀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사에서 발행한 여행자 보험 증서

자세한 사항은 미얀마 보험증서 웹사이트(<http://www.mminsurance.gov.mm>)에서 확인 가능. 외교관, UN 관계자와 그의 가족들은 각 국가의 보험으로 제출 가능.

신청링크 : <https://bit.ly/PurchaseYourTravellInsurance>

2. 여행자는 반드시 1항에서 언급한 서류의 인쇄본을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하며, 또한 미얀마 입국 시 공항에서도 보건당국에 각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
3. 여행자는 미얀마 입국 시 각 공항에서 Health Declaration Form을 보건 당국에 제시해야 합니다.

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운로드 링크 : <https://bit.ly/HealthDeclarationCard>

4. 여행자는 미얀마 도착 시 각 공항에서 실시하는 보건당국의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5. 여행자는 본인부담으로 공항에서 COVID-19 신속항원검사(RDT)가 진행되며, 검사비용으로 15,000 MMK 가 청구됩니다.

6. 여행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**COVID-19 음성결과를 받은 후 격리가 면제**됩니다.

검사 결과는 **약 1시간 내에** 확인 가능합니다.

7. 여행자는 미얀마에 머무는 기간 중 COVID-19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지정 호텔에서 보건 당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8. 여행자는 코로나19증상이 확인되거나 COVID-19 신속항원검사(RDT)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의료시설이나 치료센터 혹은 보건부 프로토콜에 의해 지정한 의료시설 또는 호텔로 이송됩니다.

9. 미얀마 출국 전 방문객들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검사시설에서 각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COVID-19 검사를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여행자 중 1번의 (a), (b) 사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구호편을 이용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
(외국인은 4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구호편 이용이 불가합니다)

11. 여행자는 엄격하게 보건당국과 공항당국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. 위반 시 COVID-19 통제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외국인은 미얀마를 경유할 수 없습니다.

13. 국영비행기나 특별비행편으로 미얀마에 방문하는 국민 또는 외국대표단은 최소 근무일 기준 도착 5일 전에 Central Committee for Prevention, Control and Treatment COVID-19, 외교부 및 보건부(MOH)로 요청서를 제출하여 위의 요구사항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14. Layover을 위해 미얀마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 승무원의 경우 다음 비행편까지 지정된 호텔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.

15. 여행자는 [이민청\(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\) 웹사이트\(https://evisa.moip.gov.mm\)](https://evisa.moip.gov.mm)를 통해서 비자 요구사항이나 면제, 기타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6. 여행객들은 DCA에서 승인한 공항을 통해서만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17. 위 지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18. 위 지침은 미얀마 표준 시각 기준 **2022년 10월 7일부로 효력을 가지며, 8월 1일에 발표된 “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”을 대체**합니다.

미얀마국제항공(MAI) 예약문의: 02-319-7676

<https://www.maiair.com/>